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성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64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3월 31일

발 의 자 :이광성 의원(1명)

찬 성 자 :강대호, 김기덕, 김제리,  
김태수, 김태호, 노승재,  
송정빈, 신정호, 유정희,  
최웅식, 최정순, 황규복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용자등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,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나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수도사용자등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42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 제41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 제목“(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)”을“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“수도계량기”를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”로,“시의 부담으로”를“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“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”를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-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,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 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 행   | 개    정    안  |
|--|--|
| <p>제42조(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) ①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.</p> <p>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.</p> <p>③ (생    략)</p> | <p>제42조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,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-----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-----.</p> <p>-----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